

공 고

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(훈령 제337호) 제4장 32조의 규정 및 2025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사업(공모)계획 및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12. 5.

의 령 군 수

1. 공고(신청)기간 : 2024. 12. 5. ~ 2024. 12. 31.
2. 신청대상 : 의령군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
 - 청년농업인 : 「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
 - 농업법인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
3. 사업내용 : 청년농업인의 초기 창농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사업을 공모형태로 지원
 - 시설농업, 노지농업, 체험·가공분야, 기타 농업관련 창농 지원등

※ 자세한 지원대상 및 자금용도는 지침 참고
4. 지원비율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읍자(자부담) 50%
 - 가. 시설농업 분야 : 개소당 7억원 내외
 - 나. 노지농업 분야 : 개소당 2억원 내외
 - 다. 체험 및 가공 분야: 개소당 3억원 내외
 - 라. 기타창농 분야: 개소당 2억원 내외
5. 선정절차 : 공모사업 신청(청년농업인) → 심의 및 추천(군) → 선정위원회 구성 및 사업대상자 확정(도)
6. 신청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첨부자료(지침참고)
7. 제출기관 :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(☎570-4134), 읍·면산업팀